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현행 「도로명주소법」은 주소를 건물(도로명주소) 및 시설물(사물주소) 중심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해수욕장·야외 행사장 등 건물 및 시설물이 없는 장소에 대하여는 주소를 부여할 법적 근거가 없음.

이로 인해 동일 지번에 여러 장소가 혼재하거나 건물·시설물이 없는 장소는 정확한 위치 특정이 불가능하여 긴급구조 지연, 길 안내 부정확, 물류 배송 오류 등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.

이에 건물 및 시설물이 없는 특정 장소에 대하여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'특정위치주소' 제도를 법률에 도입하여 국민의 위치 표시 편의를 제고하고 정확한 길 안내 및 물류 배송을 지원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 규정 및 주소정보 정의에 특정위치주소 추가(안 제1조 및 제2조)

현행법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도로명주소, 국가기초구역,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로 한정하고 있고, 주소정보의 범위 역시 이에 관한 정보로만 규정하고 있어 신설되는 특정위치주소가 이 법의 규율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, 제1조(목적) 및 제2조제11호(주소정보의 정의)에 '특정위치주소'를 추가하고, 제2조에 제13호를 신설하여 '특정위치주소'를

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부여된 주소로 정의함으로써 법률의 적용 대상 및 규율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나. 특정위치주소 부여·관리 근거 마련(안 제24조의2 신설)

건물 및 시설물이 없는 장소에 대한 위치 표시 및 물류 배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장소에 주소를 부여할 절차적 근거가 없으므로,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해당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자 또는 해당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특정위치주소의 부여·변경·폐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.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특정위치주소를 부여·변경·폐지할 수 있도록 하며, 특정위치주소의 부여·변경·폐지 기준, 절차 및 방법, 특정위치주소의 유효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”를 “국가지점번호, 사물주소 및 특정위치주소”로 한다.

제2조제11호 중 “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”를 “국가지점번호, 사물주소 및 특정위치주소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“특정위치주소”란 제7호에 따른 도로명주소와 제10호에 따른 사물주소의 부여 대상이 아닌 장소에 부여된 주소를 말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”를 “국가지점번호, 사물주소 및 특정위치주소”로 한다.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특정위치주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류 배송, 위치 또는 범위 등의 확인을 위하여 특정위치주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정위치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

1. 물류 배송, 위치 또는 범위 등을 확인하려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이 있는 자

2.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특정위치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위치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특정위치주소를 부여받은 자는 해당 장소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소멸하는 등 특정위치주소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정위치주소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정 위치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특정위치주소를 부여·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위치주소의 부여·변경·폐지에 관한 기준, 절차 및 방법, 특정위치주소의 유효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도로명주소, 국가기초구역, <u>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</u> 의 표기·사용·관리·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국가지점번호, 사물주소 및 특정위치주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10. (생략) 11. “주소정보”란 기초번호, 도로명주소, 국가기초구역, <u>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</u> 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. 12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10. (현행과 같음) 11. ----- ----- <u>국가지점번호, 사물주소 및 특정위치주소</u> -----. 12. (현행과 같음) 13. “특정위치주소”란 제7호에 따른 도로명주소와 제10호에 따른 사물주소의 부여 대상이 아닌 장소에 부여된 주소를 말한다.
제6조(기초조사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초번호, 도로	제6조(기초조사 등) ① ----- ----- -----

명주소, 국가기초구역,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부여·설정·관리 등을 위하여 도로 및 건물등의 위치에 관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----- 국가지점번호, 사물주소 및 특정위치주소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4조의2(특정위치주소) ① 다음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자는 물류 배송, 위치 또는 범위
등의 확인을 위하여 특정위치주소
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
부장관에게 특정위치주소의 부
여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

1. 물류 배송, 위치 또는 범위
등을 확인하려는 장소를 사용
할 수 있는 소유권 등 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권원이 있는
자

2.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
특정위치주소의 부여 또는 변
경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
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특정위치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
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특정위치주소를 부여받은 자는 해당 장소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소멸하는 등 특정위치주소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정위치주소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정 위치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특정위치주소를 부여·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위치주소의 부여·변경·폐지에 관한 기준, 절차 및 방법, 특정위치주소의 유효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560